

고 시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160호

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

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」 제48조에 따라 수도공급설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실효 고시 하고 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」 시행령 제4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4월 2일
서울특별시

- 1.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
 - 가. 유통 및 공급시설
 - 1) 수도공급설비 결정(변경)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폐지	-	수도공급설비	중구 신당동 837-4	848.4	감)848.4	-	-	

2.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

시설의 종류	실효일자	실효위치	실효사유	비고
수도공급설비	2026. 4. 2.	중구 신당동 837-4	○ 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」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실효하고자 함	

3. 지형도면고시

- 첨부 참조(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)

4. 기타사항

-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해 서울아리수본부 계획설계과(☎02-3146-1415)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
- 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등은 토지이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열람 가능

